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1의 기준(개별화물)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조례로서 정하는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의 조례에서는 용달화물자동차(1톤이하)의 차고지 면제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주군 내의 열악한 운송사업자의 의무면제를 통해 지역 운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삭제(안 제2조)

○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완료[기획감사실-8271(2018.10.18.)]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60882(2018.11.2.)]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18. 11. 02. ~ '18. 11.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차고지설치 면제)”를 “(차고지설치 면제 대상)”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성주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성주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4조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의 적용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삭 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성주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성주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제4조(의무 등) 운송사업자----------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 ---------.